

환경관리규정

제정 : 2015. 08. 07.

개정 : 2022. 08. 05.

담당 : 시설관리팀(02-950-5560)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조직 및 업무)
제5조(분리수거)	제6조(배출기준)	제7조(교육)	제8조(세부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환경관리"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말한다.

② "배출기관"이라 함은 이 대학교에서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대학교의 각 배출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업무) ① 이 대학교의 환경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는 사무정보처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② 배출기관의 장은 당해 부서장이 겸임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의 관리
2. 환경관리 담당자 및 유해물질 취급자의 지정
3. 기타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관리 담당자는 유해물질 취급자를 감독한다.

④ 유해물질 취급자는 관계법령과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환경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분리수거) 유해물질 취급자는 각종 폐기물을 성분별로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배출기준) 배출기관에서 관계 법령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일립행정본부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배출기관의 장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08.05)

제7조(교육)유해물질 취급자로 지정된 자는 시설관리팀에서 실시하는 환경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